

3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  4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  5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  6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-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  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
[본조신설 2021. 4. 20.]

**제6조(용도폐지 등의 협의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· 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12. 31., 2013. 3. 23.>

1.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
2. 용도폐지 · 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
3. 삭제 <2008. 12. 31.>
4. 삭제 <2008. 12. 31.>
5. 위치도

6. 미등기확인서(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<신설 2008. 12. 31., 2010. 5. 4.>

1. 토지(임야)대장 등본
2. 등기부 등본
3. 지적도 등본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08. 12. 31., 2009. 7. 27.>

**제7조(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)**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[전문개정 2022. 7. 19.]

**제8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·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,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2. 7. 19.>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2. 7. 19.>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⑤ 삭제 <2021. 9. 24.>

**제9조(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